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12조의 요약

-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비치·복식부기로 기장·장부관련 중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함(이중기록 대차평균원리의 정규 부기형식).
- 장부보존기한은 국세기본법상 7~10년(상법은 5년)
- 무기장이거나 장부비치·기록없으면 가산세 부담함(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1만분의 7 중 큰 금액).

●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장부비치·기장

① 본 조의 개요 :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장부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하는 책자를 말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기록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납세의무와 관련되는 모든 거래와 손익 및 자산거래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대차평형의 원리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본 법 제1조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만 본 법상의 장부비치 기장의무가 있다.

장부의 작성방법과 종류는 수작성·전산작성·카드식 등 형식에 관계없으며 상법상 보존연한은 10년이지만 세무상 제척기간이 7년 혹은 10년(무신고)이므로 현실적으로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장부비치·기장·기록의무 이유

법인의 과세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가감하고 기타의 세액계산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법인의 제반 거래를 복식부기방식으로 유지함으로써 거래내용의 자동검증이 가능하며 전체의 상황이 정리된다. 또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간의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도 장부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록·비치 및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II. 장부의 비치·기장 (법 제112조)

1. 장부비치와 복식부기기록

1) 장부의 개념과 유형

① 장부의 의의 및 범위

장부는 인간의 기억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록의 자리이며, 또 그

거래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부에의 기장 및 기록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분석·요약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기록의 방식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회계장부란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거래하는 분개장·원장·일기장·전표 등을 의미한다.

② 장부의 종류와 요건

본 법은 장부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총계정원장, 각계정별보조부(현금출납부나 매출장·매입장 등), 분개장 등 결산재무제표의 작성과 과세표준 등 신고에 필요한 기록인 복식부기장부로서 중요한 부분이 완비되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신빙성이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장부로는 전표·카드식·전산조직장부 등 어떤 형식도 가능하며, 대차평균에 따른 복식부기의 이중기록이 있어야 하고 법인의 모든 활동과 손익이 계산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③ 거래기록의 편철 등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편철도 장부로 볼 수 있다. 즉,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편철한 것도 장부로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거래내용이 각종 장부에 꼭 기록되거나 직접 기장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2) 복식부기의 개념과 요건

① 복식부기의 의미

복식부기란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특수한 계산형식에 의하여 대차양면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계산이 되게 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 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❷ **대차평균의 복식부기**

일반적으로 정규의 복식부기원리란 총액주의로 대차평균의 원리하에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거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이나 증가·감소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들은 거래증빙이나 지급규정 및 사규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의 귀속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여 한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복식부기방식의 장부비치·기장의무 여부

1) 복식부기장부의무자의 범위

❶ **법인세 납세의무있는 법인**

본 법상의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한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기장의무도 없음은 물론이다. 법인은 계속기업의 공준에 따라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단지 편의에 따라 1년을 단위로 법인세 납세의무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다함은 영구적 개념에서 판단하는 것인바, 감면이나 비과세 및 이월결손금의 누적 당기결손금의 발생 등으로 인해 과세대상소득이 없거나 발생되지 않더라도 이는 일시적 기간의 세금없음의 뜻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성상 납세의무있는 모든 법인은 사업손익여부에 관계없이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데, 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감면소득과 일반소득 등이 섞여있는 경우의 구분경리자체도 넓은 의미로 장부의 범위에 속한다.

② 국내사업장 없어도 부동산소득 있는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납부로 과세가 종결된다. 반대로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합산신고납부하므로 관련장부나 증빙이 비치보존되어야 한다.

본 법상 적법한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종합합산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외국법인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복식부기 장부비치 의무 예외 여부 (법 제112조단서)

① 이자 · 배당 · 주식양도 · 고정자산양도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일반적 사업수익이나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만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본 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복식부기방식의 장부기장의무는 계속적 · 능률적 사업활동분야에만 국한한다. 즉, 비영리법인에게 일반적사업(제3조제2항제1호), 계속적행위수입(제3조제2항제6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을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장부기장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고정자산처분수입 등)만 있다면 그 소득금액 파악 및 세액계산이 용이하므로 복식부기 방식의 기장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3항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 하면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에 과세하는데 복식부기장부가 아니고 단식부기나 기타 생략된 형태로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므로 세무상 과세소득은 아닐지라도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정도의 장부나 보조부는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010. 1. 1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10. 1. 1 개정)
3. 삭 제 (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010. 1. 1 개정)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7. 「연합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초생산협동조합 (2010. 1. 1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0. 1. 1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3. 12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3. 장부의 비치 · 보존연한

본 법은 장부비치기장만 규정하고 있고 보존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치 · 기장된 장부를 근거과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최소한 법인세 부과에 제척기간인 7년 혹은 10년 이상은 보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제반 증거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하여도 된다. 다음의 상법 규정은 상업장부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상 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95. 12. 29 신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신설)

4. 기장의무불이행(무기장) 가산세 (법 제76조제1항)

본 조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된다.

이 경우 본 법 제76조제1항은 세무서 결정 산출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추계에 의한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기장의무불이행가산세를 법인세로서 가산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기장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으로 볼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장부의 비치·기장이라 함은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업장부로서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완비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뜻이다.



제112조의2의 요약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연간 100만원(2009년에는 50만원, 2010년부터 액수제한 없음)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법인별로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함.
- 과세관청 요청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Ⅲ.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 (법 제112조의2)

관련법령

● **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 보관 의무 등】**

-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①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작성 · 보관**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받은 조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나 위조영수증 거래 등의 부당공제를 근절하고

기부금 공제를 활용한 세액감소목적의 가공의 기부를 방지하는 것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관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기부받는 단체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는바,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에는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발급내역에는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 그리고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8. 2. 29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 요약**

○ 내국법인은 주주, 유한회사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주주가 법인이면 법인명 · 본점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제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사원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함.

IV. 주주명부 등 작성 · 비치 (법 제118조)

본 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 · 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① 주주명부 등 작성비치

법인의 소유권변동은 주식의 소유권 변동을 뜻하는데 이는 중요한 재산거래이므로 상법상의 주주명부 등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명부는 법인의 소유권 상황과 보유 및 변동에 대한 제반내역을 기록 · 보관하고 주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주가가격이 발행액면가를 크게 웃돌고 주가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권변동이 재산세 · 증여세 · 상속세 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의 비치기록 및 보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② 내국영리법인의 주주명부 등 작성비치 의무

내국법인은 법인의 소유권인 주식의 명의현황과 변동내용을 기록하는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주의 개념이 아니고 출연의

개념이며 출연된 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이익분배 등 손익분배권의 개념이 없으므로 주주명부의 의미가 없어 이의 작성비치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③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사원명부를 말하며, 성명(법인명)·주소(본점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등을 기재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 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